## KOSHA GUIDE

C - 98 - 2014

- ② 수신호는 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실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.
- ③ 신호자는 보안경(방진용)을 착용하여야 한다.
- (자) 헬기로 부재를 운반하는 작업 시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① 상부재를 헬기로 운반 시 장척물은 반드시 2점지지로, 기타 부재는 버켓이나 포대 등에 넣어 운반하도록 하여 탈선이나 떨어짐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.
  - ② 헬기는 기종에 맞는 중량을 운반해야 하며, 장척물의 중심점이 헬기의 인하 직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③ 헬기장 주변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, 이·착륙 시 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살수 또는 방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④ 근로자는 헬기의 바람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복장을 단정히 하고 안전모 와 방진안경을 착용하여 비산된 먼지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.
  - ⑤ 작업책임자는 헬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기 전에 비행경로, 작업방법, 안 전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.





<그림 25> 헬기 이용 자재운반

- (차) 헬기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배치하고 안전대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. 헬기장에 필요한 설비는 아래와 같다.
  - ① 헬기 계류장, 이 · 착륙대
  - ② 자재하치장 및 화물달기장
  - ③ 연료저장소, 사무실, 통신설비, 화장실, 창고, 주차장
  - ④ 풍향·풍속계, 살수설비
- (카) 하강장의 구비조건은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① 하강장은 헬기장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설치하며, 선로 밑을 피한 장소로